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 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4-17호  
2024. 3. 29.(금)

## 차 례

### 조 례(11)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40호) ..... 1
-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741호) ..... 4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42호) ..... 1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43호) ..... 2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44호) ..... 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745호) ..... 3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746호) ..... 3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47호) ..... 39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748호) ..... 45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49호) ..... 4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조례 제1750호) ..... 51

### 규 칙(2)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80호) ..... 55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81호) ..... 59

## 차 례

### 훈 령(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501호) ..... 6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502호) ..... 66

### 고 시(1)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폐지 고시(고시 제2024-39호) ..... 72

### 공 고(2)

-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공람공고(공고 제2024-359호) ..... 73
- 2023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공고 제2024-362호) ..... 79

### 입 법 예 고 ( 4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335호) ..... 1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367호) ..... 11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370호) ..... 1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371호) ..... 154

### 행 정 예 고 ( 1 )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 장비 클린지킴이(CCTV) 이전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제2024-369호) ..... 161

공 략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40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단위 : 원)

지급기준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 1인	월 1,200,000	월 300,00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되어,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반영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함(별표 1).
- (당초) 1,100,000원 ⇒ (변경) 1,500,000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41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복지문화국 분장사무란의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국가유산 보호관리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향토유산의 보호”로, “향토문화유산의 계승·보존”을 “향토유산의 계승·보존”으로 한다.

제2조 중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 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가”를 ““향토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이”로 한다.

제3조 중 “향토문화유산의”를 “향토유산의”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향토유산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을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유산이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문화재”를 “향토유산이 지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0조 중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2조 중 “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문화재관리”를 “국가유산관리”로 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 재난수습 주관부서(제5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자치행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민원정보과 -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 -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관광체육과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에너지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산업과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화재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안전총괄과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경제과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교통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 교통과 - 교통과 - 건축과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경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총괄과
소방청	가. 화재·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안전총괄과
국가유산청	가. 국가유산 시설 사고	문화유산체육과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공원녹지과
해양경찰청	가.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신청서 (제8조제1항 관련)			
명 칭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정사유			
연혁, 유래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_____ 성명: _____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향토유산의 유래, 연혁·현황 등 전반적인 관련 자료 2. 해당 분야 국가유산 전문가 추천서 3. 향토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향토유산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유산 지정서

○ 명 칭 :

○ 소재지 :

○ 수 량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발급번호 00000000-0000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향토유산 명칭	지정 번호	지 연월일	정 년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 소	소유자 등		발급 연월일	발급인
							주소	성명		

## 향토유산 관리카드

(앞면)

명 칭		지 정 번호	
소재지 (주소)		지 정 년월일	
소유 자	주소	관리 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내 용		규 모	
지정사유			
【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			

(뒷면)

위 치 도
관 련 사 진



[별표]

**공공디자인 등 세부사항(제2조 관련)**

1. 공공디자인

적용 대상	종류
대중교통시설	버스·택시·BRT 정류소 및 승차대, 자전거보관대, 주차관련 시설물, 지하철출입구(캐노피 포함), 환기구(흡·배기구), 지하철 지상노출 승강기, 교통량 검지기, 교통 감시시설,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보행안전시설	차량진입방지용 말뚝, 보도·점자블록, 보행가로, 자전거도로, 보호펜스, 가로등, 보안등, 보행유도등, 보도육교(승강기 포함), 지하보도(승강기 포함), 방음벽,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20m이상 도로의 식축 및 옹벽
편의시설물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구두수선소·버스카드 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파고라,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키오스크, 공중전화부스, 인포메이션부스,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횡단보도 쉼터, 시계탑,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급시설물	맨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CCTV 지주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대(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벽천, 배수구덮개, 가로 녹지대 등
안내시설물	보행자·택시·지하철·주차장·시티투어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관광안내소, 관광안내도, <b>국가유산</b> 설명표지판, 사설안내표지, 지하철안내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 등
그 밖에 준하는 시설물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위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지하차도 포함), 버스·트램 디자인, 광장, 담장·옹벽 등 벽화,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옥외전광판, 아치 그 밖에 유사한 것, 하천시설물(육

감문, 옹역, 석축 포함)
----------------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대상	종류
정보매체	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간	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3. 범용디자인

적용 대상	종류
정보매체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성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다양한 시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간	다양한 시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4. 공공조형물

적용 대상	종류
조형시설물	회화·조각·공예 등
환경시설물	분수대·폭포 등
상징조형물	상징탑·기념비·상징물·동상 등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4. 5. 17. 시행) 및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제·개정(2024. 5. 17. 시행)에 맞춰 “문화재” 등의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국가유산 체제 전환 및 관계법의 제·개정에 따라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등 용어와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42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를 “대덕구”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사위원회”를 “선발에 있어 구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포상 취소) ① 제10조에 따라 선발된 포상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구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⑪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㉑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수용하여 포상 대상자 선발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포상이 부적절한 자가 발생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포상 대상자 선발 시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보완함(제10조제2항).
-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여받은 포상에 대한 취소 절차를 마련함(제10조의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43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부채납일”을 “사용허가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를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로, “3회”를 “4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를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로, “4회”를 “6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00만원 초과”를 “200만원 초과”로, “6회”를 “12회”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별표 중 제1호나목의 회의실(사용인원)란의 “150~199”을 “150~199명”으로 하고, 제1호나목의 휴게실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다목4)의 “갱의실(남)”을 “탈의실(남)”으로, “갱의실(여)”을 “탈의실(여)”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휴 게 실	공무원	$2.0\text{m}^2 \times \text{공무원 수} \times 0.15$	남·여 구분
	청소근로자	$1.5\text{m}^2 \times \text{청소근로자수(최소 } 6\text{m}^2 \text{ 이상)}$	

5. 공통사항 : 근로자의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함.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및 분할납부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기부채납된 행정 재산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로 변경함(제16조).
-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의 범위’에서 ‘연 12회 범위’로 조정하면서 세부 기준금액 범위를 변경함(제34조제2항).
- 「정부조직법」 개정(2023. 3. 4. 개정, 2023. 6. 5. 시행)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정비함(제37조제1항).
-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조정함(제62조제1항).
- 구 청사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의 휴게실 면적기준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44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3.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증가와 저연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과 과의존으로부터 초래되는 피해 방지 및 해소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대덕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주요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확대함(제2조제2항 신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45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대덕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
2. 사업의 인력 및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自助團體) 활동 지원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4.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6.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돌봄 지원
7.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8.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
9.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10. 법 제32조에 따른 휴식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6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단체를 보호·육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복지시설 확충)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복지단체·교육기관·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확대함(제2조제2항 신설).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및 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46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

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  
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  
원을 받지 못하는 18세 이하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  
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 및 추진 방법
3.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와 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지를 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47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명칭	구분	위치
대덕문화체육관	체육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85 (목상동)
중리근린공원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로41번길 28, 2층 (중리동)
석봉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79, 3층 (석봉동)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120 (신일동)
	실외테니스장	
	족구경기장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101 (목상동)
	헬스장	
	다목적실	
송촌생활체육공원	실외테니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110, 실외테니스장 (송촌동)
	풋살경기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풋살경기장 (법동)
	족구경기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족구장 (법동)
	배드민턴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배드민턴장 (법동)
	게이트볼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게이트볼장 (법동)
	농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농구장 (법동)
	X-게임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X-게임장 (법동)
로하스 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7번길 200 (석봉동)
송촌진천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57 (송촌동)
대청수상 레포츠센터	관리동 및 승선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167 (신탄진동)
	하선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7번길 200 (석봉동)
로하스타워1 어린이 스포츠센터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167 (신탄진동)
덕암야구장	야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산 9-7번지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 관련)

가. 전용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기 준	구 분		비 고	
			평일	주말		
대덕문화체육관	체육경기	1회 (1일, 4시간)	50,000	75,000	○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체육경기외	1회 (1일, 4시간)	62,500	93,800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체육경기	1회 (1일, 2시간)	37,500	62,500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징수함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계산함	
		1회 (1일, 4시간)	62,500	93,800		
	체육경기외	1회 (1일, 2시간)	75,000	125,000		
		1회 (1일, 4시간)	125,000	187,500		
축구경기장	체육경기 등	1면, 2시간	3,000	5,000		
대 덕 국 민 체 육 센 터	수영장	체육경기	1회 (1일, 4시간)	200,000	300,000	○주민등록법, 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체육공원 축구장 전용 사용료의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체육경기외	1회 (1일, 4시간)	300,000	450,000	
	다 목 적 실	1회 (1일, 4시간)	40,000	60,000	○다목적실 1실 사용료 기준	
풋살경기장	체육경기 등	1면, 1시간	12,500	25,000	○조명 사용 시 사용료에 1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조명 사용료 제외)	
대 청 수 상 레포츠센터	체육경기	1회 (1일, 8시간)	1,000,000	1,000,000	○사용가능 시간(09~18시)	
	체육경기외	1회 (1일, 8시간)	1,300,000	1,800,000		
덕 암 야 구 장	체육경기	1회 (1면, 2시간)	40,000	80,000	○사용가능 시간(09~18시)	
	체육경기외	1회 (1면, 2시간)	50,000	100,000		

나. 시설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사용구분	어 른	청소년	어린이		
대덕문화체육관 중대근린공원국민체육센터 석봉국민체육센터	월 회원권	30,000	22,000	15,000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1회 이용	2,200	1,700	1,400		
대덕국민 체육센터	수영장 (자유이용)	월 회원권	52,000	38,000	29,000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헬스장과 다목적실 시설 사용료의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프로그램 참가 월 회원 ○조명 사용 시 3,000원 추가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조명 사용료 제외)
		1회 이용	4,300	2,700	2,000	
	수영장 (강습)	월 회원권	62,000	48,000	39,000	
		1회 이용	50,000		2,500	
	헬스장	월 회원권	50,000		2,500	
다목적실	월 회원권	62,500		4,000		
실외테니스장	평일 (1면, 1시간)	4,000			○조명 사용 시 3,000원 추가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조명 사용료 제외)	
	주말 (1면, 1시간)	4,000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1회 이용	6,300	5,000	3,800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입장 시 보호자 동반해야 함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어린이스포츠센터	1회, 2시간	5,000	-	17,000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대 청 수 상 레포츠센터	카누·카약 레 프 팅 오 리 배	1회 이용	25,000	23,000	20,000	○입장 가능 연령을 7세 이상으로 제한함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1회 이용	20,000	18,000	15,000	
		1회 이용	10,000	6,000	4,000	
	노 보 트 수상자전거 (2인승)	1회 이용	20,000		12,000	
		1회 이용	15,000		15,000	
	범 퍼 보 트 (2인승)	1회 이용	15,000		15,000	

다. 부속설비 사용료

구분	사 용 료	비 고
음향시설 (확성기 및 마이크)	기본료(30,000원)+마이크 1대당 5,000원	
전기료	① 주변압기 전력기본요금×1.1 ② 전력사용량(kw)×전력요금×1.1	
냉방·난방 시설	기본료(30,000원)+(전기요금 및 유류대 실비)	
전광판	30,000원(1회)	

라. 중계 방송료

(단위: 원)

종 류	기 준	방 송 료		비 고	
		TV	라 디 오		
프 로 경 기	국제경기	1일	30,000	18,000	
	국내경기	1일	18,000	10,000	
아 마 추 어	국제경기	1일	15,000	8,000	
	국내경기	1일	8,000	6,000	
체 육 외 행사		1회	40,000	20,000	
녹화 또는 행사			중계 방송료의 1/2 해당액		
경기 또는 행사촬영			TV중계 방송료와 동일		

마. 상행위 사용료

(단위: 원)

구분	기준 및 규격	사용료	비 고
에드빌론 및 유사물 계약에 의한 광고행위	1일 1개	5,00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함 (다만,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그 밖의 사용료 (선전광고 게시 등)	1M×10M 이내	50,000	○ 5일 이내: 50,000원 ○ 매 1일 경과 시 5,000원 추가 ○ 연간 게시: 공개경쟁입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신설로 인하여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규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함(별표 1).
- 시설별 사용료에 신규 시설을 추가함(별표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 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48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정서적인 교감을 목적으로 반려식물을 키우며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 사업
2. 반려식물·원에 관련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 및 원에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 보급,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애착을 갖고 키우며 교감하는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반려식물 육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반려식물을 통한 구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제3조).
- 추진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49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화재안전시설(옥상자동개폐시설 등) 설치 및 보수·보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에 구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화재안전시설을 설치 및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제4조제11호 신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50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유아기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구청장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조기 발견
2.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의 지원
4. 효과적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계 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제3조).
-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 사무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80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이상의”를 “이상 또는 민간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으로 한다.

제9조 중 “서명하고,”를 “서명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포상에 따른 부상 기준(제4조 관련)

#### 1. 정기포상

포 상 명	인 원	포상시기	대 상	시상금 또는 부상	비 고
자랑스러운 공무원	1명	12월	공무원	2,000천원	
으뜸 공무원	8명	분기별	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공무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름				
효행 공무원	1명	5월	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 또는 퇴직준비 교육 공무원	미정	퇴직일 또는 퇴직준비교육 시작일	공무원	-	

#### 2. 수시포상(부서)

분 야	내 용	시상금 또는 부상
국비·시비 확보	25억원 이상	5,000천원
	20억원~25억원	4,500천원
	10억원~20억원	3,500천원
	7억원~10억원	2,500천원
	3억원~7억원	2,000천원
	5천만원~3억원	1,000천원
	1천만원~5천만원	500천원
상사업비 확보	3억원 이상	5,000천원
	2억원~3억원	4,000천원
	1억원~2억원	3,000천원
	5천만원~1억원	2,000천원
	1천만원~5천만원	1,000천원
	1백만원~1천만원	500천원
기관 표창	대통령 표창	1,000천원
	국무총리 표창	700천원
	중앙행정기관장 표창	500천원
	유관 민간기관 표창	500천원
구정발전 기여	S등급	1,000천원
	A등급	700천원
	B등급	500천원

\* 일상적인 국·시비 보조사업 등 제외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계획에 따름.

### 3. 수시포상

포 상 명	인 원	포상시기	대 상	시상금 또는 부상	비 고
그 밖에 부서에서 추진하는 포상	연도별 계획에 따름	수시	공무원, 부서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배우자	미정	수시 또는 공무원 포상시	공무원의 배우자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제공 근거를 삭제하고, 정기포상 및 수시포상에 대한 내역을 정비하여 기존 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정기포상 내역을 정비함(제3조제2항, 별표).
  -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또는 부상 내역을 삭제하고, 공무원 포상 선발인원을 확대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 대하여 시상함으로써 사기를 제고함.
- 수시포상 선발과 부상 기준 및 조문을 명확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함(제3조제3항, 제9조, 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81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지 제16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6의2서식]

<b>공 유 재 산 매 수 신 청 서</b>					
신청인	① 성명		② 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신청 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m <sup>2</sup> )	매수 사유	취득·교환시기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신청을 철회한 경우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할 것을 확인함.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수자 공무원 여부 표기					
- 공무원 여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부서 :                    , 주요업무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권고사항에 의거 매수신청서에 공무원 여부 확인란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16의2서식).
  - 공유재산 매수신청서에 공무원 여부 확인란을 신설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4년 3월 29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501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현장지휘자”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편성 기준의 담당관 이상 직책자 중 재난현장에 출동한 최상급 지위자를 말한다.
4. “재난현장지휘자의 임무”란 조례 제3조의 기능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난현장지휘자의 지시에 따른 사항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근무일시 : 2024. . . ( ) ~ . . . ( ) 날씨( )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유 관 기 관
주 간	상황실장			대덕소방서: 270 - 1541 대덕경찰서: 600 - 4191 시 상황실: 8 - 3119
	근 무 자			
야 간	상황실장			
	근 무 자			

유관기관 점검 및 시정 보고							
구 분	주간근무자(공휴일)			야간근무자(평일·공휴일)		야간근무자(평일·공휴일)	
	(10:00)		(15:00)	(19:00)		(7:00)	
	수화자	이상유무	정기교신 수신유무	수화자	이상유무	수화자	이상유무
대덕소방서							
대덕경찰서							
시 상황실							

#### ○ 지시사항 및 주요상황(조치)

지시사항	▪
주요상황 (조치)	▪

#### ○ 중요사항 상황관리

일 시	내 용
	<주요사고 관련>
	<화재발생 관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수습을 위해 재난현장에서 지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규정하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근무 효율 향상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재난현장지휘자 및 재난현장지휘자의 임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재난안전상황실장과의 관계를 설정함.

- 1) “재난현장지휘자”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편성기준의 담당관 이상 중 재난현장에 출동한 최상급 지위자로 규정함(제2조제3호 신설).
- 2) “재난현장지휘자 임무”를 재난현장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제2조제4호 신설).
- 3) 재난발생 시 상황실장은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등 업무수행을 지휘하고, 재난현장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상황실장과 재난현장지휘자와의 관계를 명시함(제4조제2항제8호 신설).

나.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 내 불필요한 상황실장 서명란 존재 및 재난안전통신망 점검란 누락 등 현행 근무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4년 3월 29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502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제3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톱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를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7조제5호, 제8조제1항,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11조제3항 본문,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3조제5항제6호, 제13조제5항제7호, 제13조제9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4항제1호, 제17조제4항제4호, 제19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0조제3항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성폭력”을 “성폭력, 스톱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성희롱”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성희롱”을 “성희롱, 성폭력, 스톱킹”으로 한다.

제20조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이 훈령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훈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접수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대리인)		고충내용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담당자)	책임관 (과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					
접수일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담(신청)내용	* 6하 원칙에 의해 신청이유, 취지,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중지 (     )    2. 공개사과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그 밖의 사항 (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3. 1. 17. 제정, ’23. 7. 18. 시행) 제정으로 스톱킹 방지를 위한 예방 지침 마련 및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에 추가하여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규정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으로 변경함.
- 나. 스톱킹 예방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정비함(제1조 및 제2조).
- 다.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변경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제1조부터 20조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부여 고시일
평촌동 539-5	신탄진로 631	건물신축	신탄진으로 가는 주요도로 기능 반영	2024. 3. 29.
상서동 442-6	신탄진로 466	건물신축	신탄진으로 가는 주요도로 기능 반영	2024. 3. 29.

○ 도로명주소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관련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신탄진로 446	상서동442-6	2024. 3. 27.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042-608-5304)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공람공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

2024년 3월 29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명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사업의 명칭: 회덕동(장동) ~ 상서간 도로개설사업

#### 3. 사업예정지

- 사업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370-2번지 ~ 상서동 54-2번지 일원

#### 4. 사업의 규모

- 사업의 규모: L=1,368m, B=10~11m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0년 11월 27일 ~ 2024년 12월 31일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편입토지조서 세목조서 붙임”

#### 7.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8.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공람기간 내 (2024. 3. 29. ~ 2024. 4. 12.)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토 지 조 서

## □ 대덕구 장동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 적 면 적 (㎡)	편 입 면 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370-6	대	363	41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2	370-3	답	288	115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3	371-4	전	192	25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4	370-8	답	309	309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5	365-7	채	566	566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6	371-6	전	49	49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7	371-7	전	380	380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8	374-4	답	25	25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9	375-3	답	383	383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10	831-42	천	415	415	국	국토교통부			
11	산 117-10	임	10,153	10,153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12	산 116-19	임	589	589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합 계			13,712	13,050					

## □ 대덕구 상서동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 적 면 적 (㎡)	편 입 면 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산16-6	임	2,107	2,107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2	산16-7	임	6,278	6,278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 적 면 적 (㎡)	편 입 면 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	산17-9	임	515	515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4	산 17-10	임	1,162	1,162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5	산15-1	임	7,668	7,668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6	19-3	전	793	793	국	기획재정부			
7	19-6	전	29	29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8	19-7	전	80	80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9	산 17-11	임	432	432	송인업 외1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326-82			
10	21-3	전	888	888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11	799-10	구	556	556	국	농림축산식품부			
12	20	전	205	205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13	22-5	전	126	126	국	국토교통부			
14	24-4	답	68	68	국	국토교통부			
15	23-1	답	131	131	국	국토교통부			
16	22-4	전	474	474	국	국토교통부			
17	26-3	답	467	467	국	국토교통부			
18	26-4	답	38	38	국	국토교통부			
19	27-1	전	153	153	국	국토교통부			
20	799-11	구	1,121	1,121	국	철도청			
21	799-12	구	1,214	1,214	국	철도청			
22	31	전	1,233	418	국	국토교통부			
23	31-4	전	20,533	3,911	국	국토교통부			
24	58-2	임	883	282	국	국토교통부			
25	58-1	임	2,502	125	국	국토교통부			
26	54-2	전	1,498	673	국	국토교통부			
27	55-5	전	3,609	577	국	국토교통부			
28	산20-2	임	298	32	국	국토교통부			
29	55-4	전	530	3	국	국토교통부			
30	31-3	전	19	19	국	국토교통부			
31	54-1	전	612	179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32	31-1	전	1,507	380	국	국토교통부			
33	산23-5	임	5,355	235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 적 면 적 (㎡)	편 입 면 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4	산21-3	임	496	35	국	국토교통부			
35	산22-2	임	397	43	국	국토교통부			
36	49-1	대	2,809	76	㈜대영1급 자동차공업사	대덕구 상서당3길 27-1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신탄진지점)	
37	49-2	임	184	184	㈜대영1급 자동차공업사	대덕구 상서당3길 27-1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신탄진지점)	
38	산21-1	임	3,967	212	송치홍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 112동 1208호			
39	46-3	대	150	70	송의섭	동구 총무로203번길 32			
40	46-4	대	205	146	송의섭	동구 총무로203번길 32			
41	46-2	대	567	233	권영구	유성구 지족동 874 열매마을아파트3단지 308-1402			
42	46	대	1,406	188	유병기	대덕구 상서동 46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신탄진지점)	
43	804	도	1,511	171	국	국토교통부			
44	44	임	212	169	송정섭 외2	대덕구 상서동 292			
45	43	전	1,412	5	심상철	대덕구 상서동 146-3 대창아파트 3동 106호			
46	45-1	답	273	180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47	420	답	1,980	243	김영옥	대덕구 중리동 383-8 302호			
48	45	답	144	123	박순자	세종시 남세종로 358, 206동 1802호			
49	419-2	장	1,840	425	정석용	시구 삼천동 991 국화아파트 604-1003			
50	419-4	도	374	374	정석용	시구 삼천동 991 국화아파트 604-1003			
51	426	창	730	166	오보근	대덕구 덕암로 200, 109동 1302호	신탄진 농업협동조합	대전 대덕구 덕암로181번길 2	
52	426-1	답	341	341	오보근	대덕구 덕암로 200, 109동 1302호			
53	426-2	답	28	28	오보근	대덕구 덕암로 200, 109동 1302호			
54	427	창	1,645	5	(유)오성알씨	대덕구 상서동 418-3	신탄진 농업협동조합	대전 대덕구 덕암로181번길 2	
55	426-3	답	37	37	오보근	대덕구 덕암로 200, 109동 1302호			
56	425-1	도	51	3	오보근	대덕구 덕암로 200, 109동 1302호	신탄진 농업협동조합	대전 대덕구 덕암로181번길 2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 적 면 적 (㎡)	편 입 면 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7	839	도	1,932	37	국	국토교통부			
58	423 -13	임	893	7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59	423-2	임	1,127	47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60	423-4	임	401	5	㈜삼원테크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127-114			
합 계			88,196	34,892					

※ 편입면적은 분할측량 및 등록전환 후 조정될 수 있으며, 편입토지 내 지장물 포함임.(지장물건은 조정될 수 있음)

끝.



## 2023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과 관련된 전년도 재난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전년도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사유시설(주택, 농림시설 등)의 피해가 있었으며 총 5천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안전총괄과 16명으로 전년대비 2명 증가했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8종으로 107개소에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14개 증가하였습니다.
  -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교육은 재난안전관련 159개 분야 341명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 안전관리계획 및 정책의 총괄·심의를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신속한 재난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종합상황실이 운영하고 있으며, 27개의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약 38억 원의 재난방지시설 예산을 확보하였고 관내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1개 재난방지시설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하천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한 오일펜스 등 3종류의 환경방재물자가 있으며 호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방자재는 마대 등 6종류의 방재물자가 있습니다.
- 의료시설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219개의 병·의원에 2,214개의 병상과 404명의 의사 및 754명의 간호사가 있으며,
- 학교, 마을회관 등 재난 발생시 주민을 대피·수용할 수 있는 29개의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 복구장비(굴삭기 등) 5종류, 산불진화장비(산불진화차 등) 3종류 등 1,280개를 지정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기술 인력은 건축·토목 등 11개 분야 90명, 기능 인력은 전기·기계 등 12개 분야 102명이 있으며,
- 의용소방대·적십자봉사대 등 7개의 특수단체·자원봉사단체 1,719명이 있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연도 확보 기준액은 505백만원으로 505백만원 확보되어 100% 확보되었습니다.
-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안전도 진단 지수는 0.46로 E등급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구의 재난관리 역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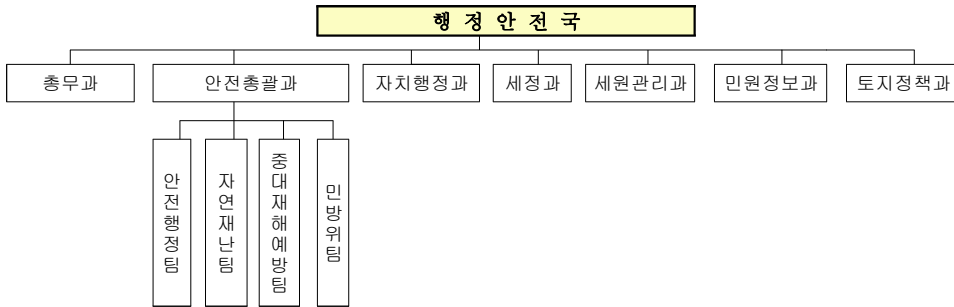
###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2023.7.9. ~ 2023.7.19.	호우·강풍·풍랑	- 주택침수 6건 - 농작물피해 10건 - 임산물피해 1건 - 소상공인 1건	재난지원금 27,500,000원	지급 완료
2023.7.9. ~ 2023.7.19.	호우·강풍·풍랑	- 주택침수 6건 - 소상공인 1건	위로금 22,000,000원	지급 완료
2023.8.9. ~ 2023.8.11.	태풍(카눈)	- 임산물피해 1건	재난지원금 500,000원	지급 완료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 ①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가. 기구



##### 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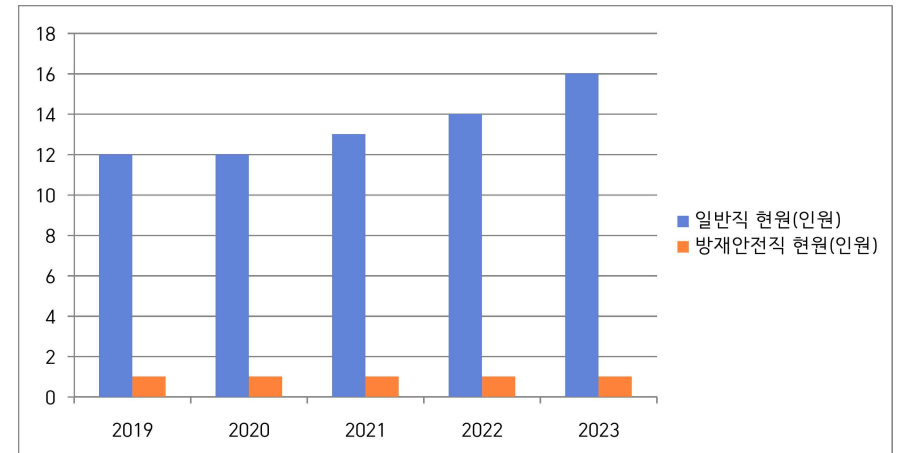
과 별	계	일 반 직						기타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6	16	1	5	5	5	0	
	현원	16	16	1	5	7	1	2	

### 다. 방재안전직 정원현황

과 별	계	일 반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	1	-	-	-	1	-	-
	현원	1	1	-	-	-	1	-	-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반직 현원(인원) * 방재안전직 포함	12	12	13	14	16
방재안전직 현원(인원)	1	1	1	1	1



☞ 방재안전직의 인원은 전년도와 비교 증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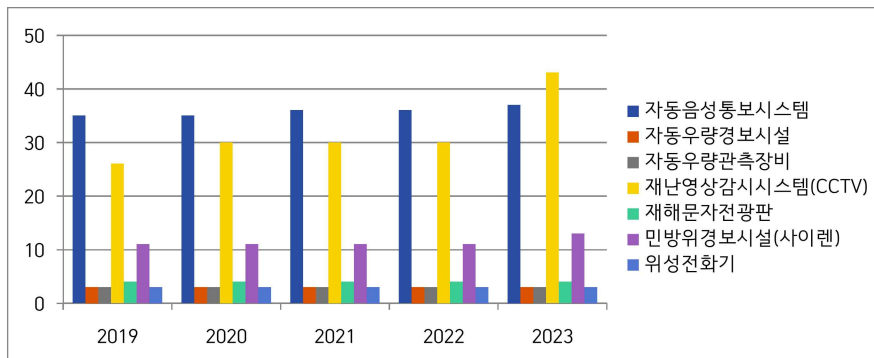
## ②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 가. 현황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7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등
자동우량경보시설	3	구청 옥상, 회덕동, 목상동
자동우량관측장비	3	구청 옥상, 회덕동, 목상동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43	한밭대교, 로하스캠핑장 등
재해문자전광판	4	오정동, 현도교, 법동소류지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3	구청, 오정동행정복지센터 등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1	구청 재난안전상황실
위성전화기	3	구청 재난안전상황실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5	35	36	36	37
자동우량경보시설	3	3	3	3	3
자동우량관측장비	3	3	3	3	3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26	30	30	30	43
재해문자전광판	4	4	4	4	4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1	11	11	11	13
위성전화기	3	3	3	3	3



## ③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 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현황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상·하반기	대전광역시	54	
재난과 협업 등 3건	연중	강원도공무원 교육원	3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이해과정 등 89건	연중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44	
건설안전 관리 등 5건	연중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5	
재난안전의 이해 등 34건	연중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105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연중	대한산업안전협회	1	
산불전문 안전교육 등 2건	연중	산림교육원	2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과정	연중	전기안전교육원	1	
재난안전 실무자 전문과정	연중	지방공기업평가원	1	
재난안전통신망의 이해 등 6건	연중	지방자치인재 개발원	9	
통계로 보는 안전교육	연중	통계교육원	1	
감염성물질의 안전수송관리 등 4건	연중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4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등 7건	연중	한국소방안전원	7	
중대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이 행 등 3건	연중	해양수산인재 개발원	3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	연중	환경보전협회	1	

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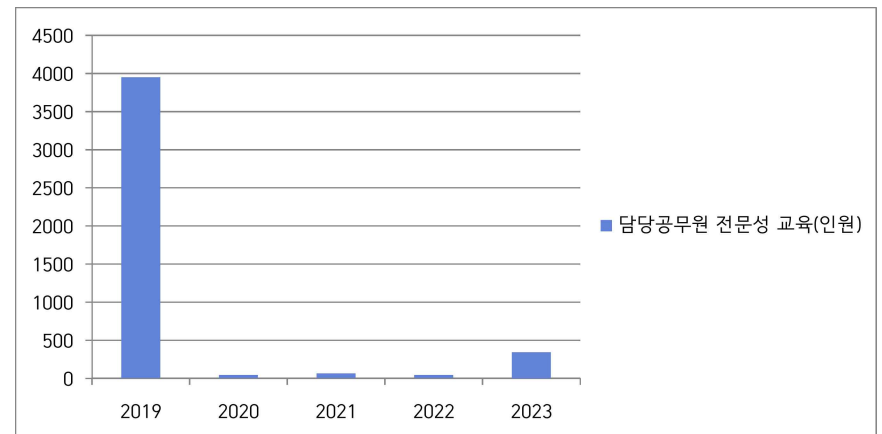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용	주관	비고
1.26.	대덕구청	54	자연재난 대처 일반요령 등	안전총괄과	
3. 2.	대덕구 관내	13	해빙기 대처 일반요령 및 교육 등	안전총괄과	
5. 4.	대덕구 관내	15	여름철 위기 대처 일반요령 및 교육 등	안전총괄과	
7. 6.	대덕구 관내	11	여름철 위기 대처 일반요령 및 교육 등	안전총괄과	
9. 7.	대덕구 관내	13	겨울철 태풍 및 산불 대비 교육 등	안전총괄과	
11. 8.	충남 안전체험관	82	자연·사회재난 체형 및 소방시설, 심폐소생술 교육 등	안전총괄과	
12. 13.	대덕구 관내	10	겨울철 대설 및 한파 대비 교육 등	안전총괄과	

다. 재난관리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용	주관	비고
재난안전 교육 등	연중	대덕구 관내 등	29,000	생활안전 및 재난안전 분야 체험교육 등	대덕구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3,947	41	61	42	341



#### ④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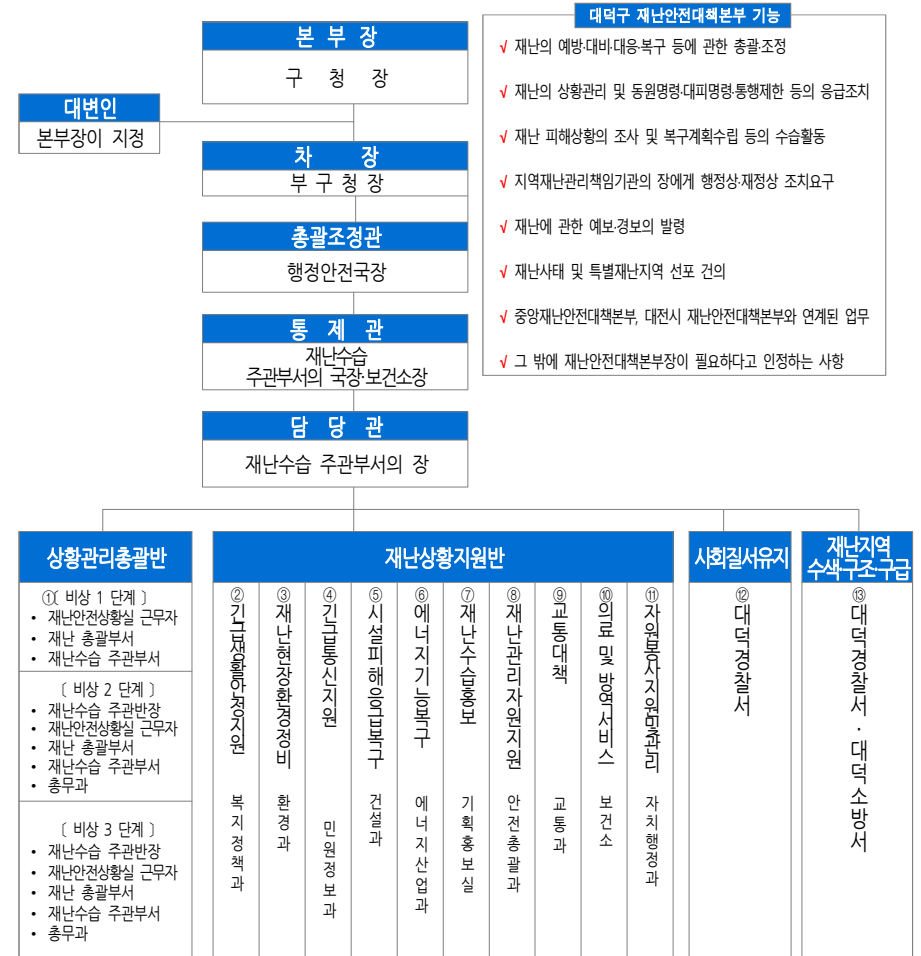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분	근거	구성	기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 위원장 : 구청장 • 위원 : 25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li> <li>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li> <li>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li> <li>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li> <li>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ul>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 지역본부장 : 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li> <li>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li> <li>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li> <li>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안전정책실무조정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원 : 2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li> <li>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li> </ul>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같은 법 제12조의2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원 : 16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li> <li>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li> <li>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li> </ul>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li> </ul>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li> <li>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li> </ul>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li> </ul>
----------	-----------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 조직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주관부서
화재, 풍수해, 지진, 화산, 낙뢰, 가뭄, 황사, 원자력안전	안전총괄과
학교 및 학교시설, 파업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민원정보과
청사주요시설	총무과
체육시설 및 공연장, 문화재	문화관광체육과
가축질병, 저수지	에너지산업과
산불, 산사태	공원녹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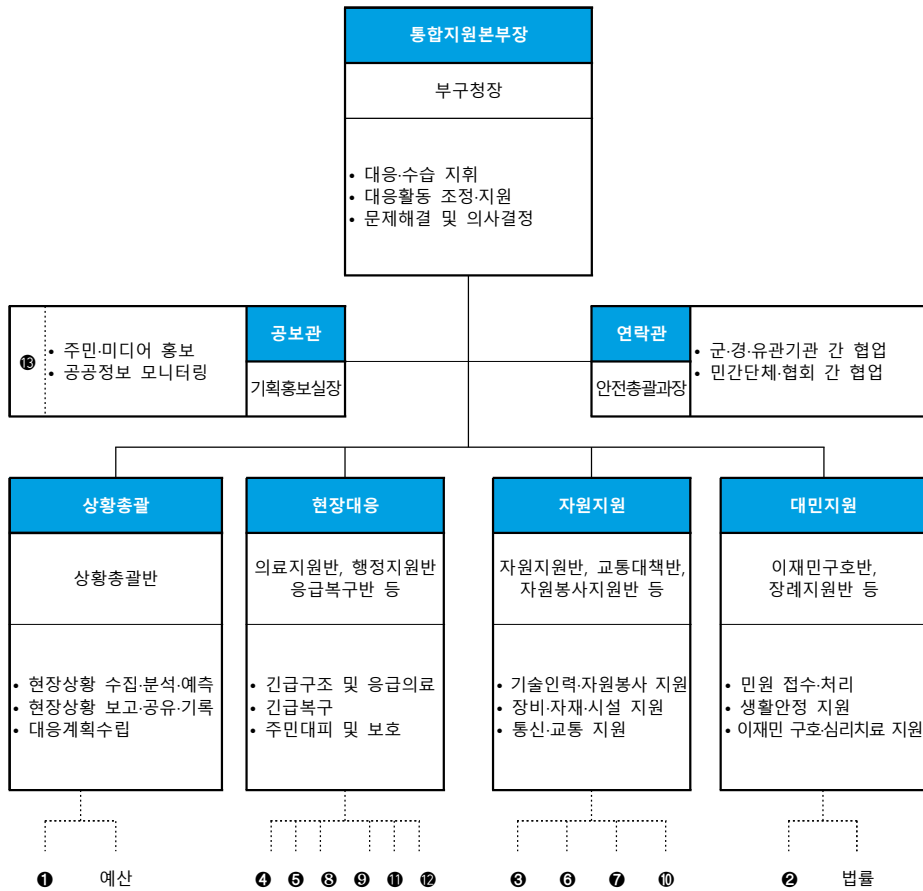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주관부서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조류 대발생	환경과
다중밀집시설 붕괴	건축과
도로터널	건설과
육상화물운송, 고속철도, 항공기	교통과
감염병, 보건의료	보건소
에너지	에너지산업과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기능 별	주요 임무	소관재난수습부서	비고
① 상황관리 총괄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상황보고서 작성,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 행정지원	안전총괄과 감사실	
② 긴급생활안전지원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관리, 홍보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사망·실종자 유족대책 등	복지정책과	
③ 재난현장환경정비	○육상, 해상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피해상황 및 처리 실태, 관리, 수거, 처리지원, 시·구 복구현황 파악	환경과	
④ 긴급통신지원	○통신시설 피해상황 및 긴급소통상황 파악,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지원, 시·구 복구현황 파악	총무과 민원정보과	
⑤ 시설응급복구	○공공·유사시설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 상황파악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등 지원	건설과 에너지산업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문화관광체육과 상수도본부 대체육소 하천관리사업소	
⑥ 에너지 기능복구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상황파악, 기능회복지원 시·구 복구현황 파악	에너지산업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⑦ 재난수습 홍보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예경보발령 사항 등의 전파, 각종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보도지원 등	문화관광체육과 기획홍보실	
⑧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방재지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지원에 대한 추적관리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파악, 지원 활동전개	안전총괄과	
⑨ 교통대책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파악보고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지원	교통과 건설과	
⑩ 의료방역	○의료, 방역서비스제공에 대한 현황파악, 자원배분조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위생과	
⑪ 자원봉사 관리	○자원봉사인력수요 파악 및 지원, 긴급대응인력 투입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노인장애인과 가족친화과	
⑫ 사회질서 유지	○교통·통제, 현장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등	대덕경찰서 교통과	
⑬ 수색 구조·구급	○인명구조상황 총괄 조정 및 지휘 응급처치, 응급수송, 사망·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대덕소방서 민원봉사과	
동 주민센터(12개동), 복합문화센터 지역자율방재단(각동)	○업무지원	각 동장 복합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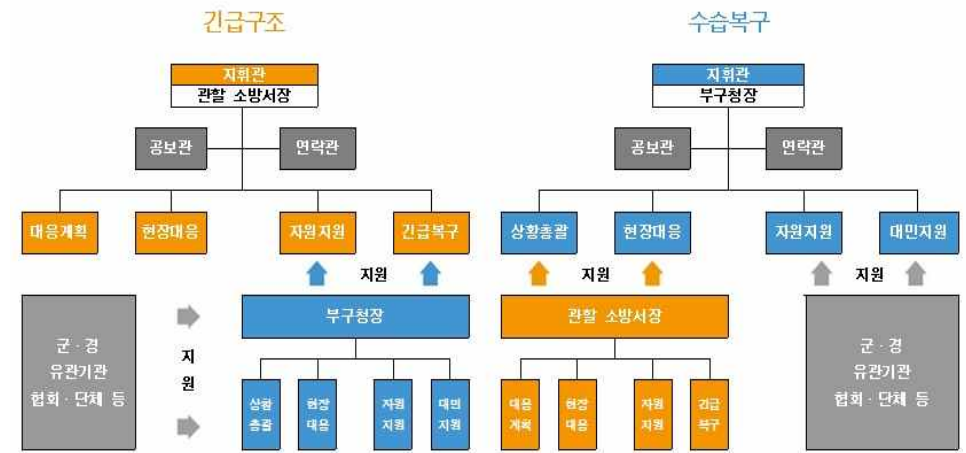
(나) 재난현장 안전관리체계

○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구성



-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 ① 상황관리
  - ② 생활안전지원
  - ③ 통신지원
  - ④ 시설피해 응급복구
  - ⑤ 에너지 시설 복구
  - ⑥ 자원지원
  - ⑦ 교통대책
  - ⑧ 의료·방역
  - ⑨ 환경정비
  - ⑩ 자원봉사
  - ⑪ 사회질서유지
  - ⑫ 수색·구조·구급
  - ⑬ 홍보

재난현장 지휘 및 협업체계



○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구분	주요임무
통합지원본부장 (부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대응·수습 총괄</li> <li>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li> <li>구조 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li> </ul>
공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 미디어 홍보</li> <li>공공정보 모니터링</li> <li>대응단체 정보공유</li> </ul>
연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경·유관기관간 협업</li> <li>민간단체·협회간 협업</li> </ul>
상황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지원본부 운영</li> <li>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li> <li>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li> <li>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li> <li>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li> </ul>
현장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 응급복구</li> <li>에너지 복구</li> <li>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li> <li>환경정비</li> <li>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li> </ul>
자원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통신지원</li> <li>현장대응 자원지원</li> <li>교통대책</li> <li>자원봉사지원</li> </ul>
대민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li> <li>생활안정지원</li> <li>이재민구호·심리지원</li> <li>장례지원 등</li> </ul>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명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규정	2004. 12. 31.	
대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덕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04. 12. 31.	
대덕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 대덕구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5. 01. 14.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5. 02. 04.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05. 02. 11.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5. 05. 06.	
대덕구 재난 예보·경보 운영 규정	◦ 대덕구 재난 예보·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6. 06. 23.	
대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7. 02. 16.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지역자율방재단 임원구성 및 활동지원, 교육, 훈련 등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8. 05. 23.	
대덕구 안전도시조례	◦ 구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9. 12. 09.	
대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지진발생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 내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2. 12. 07.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대덕구 통합지원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4. 02. 07.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5. 11. 20.	
대덕구 안전관리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7. 07. 07.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비용을 지급기준 규정	2018. 02. 02.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8. 10. 01.	
대덕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사항 규정	2019. 04. 26.	
대덕구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 대덕구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9. 06. 21.	
대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한 구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9. 10. 18.	
대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019. 12. 20.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9. 12. 20.	
대덕구 재해영향평가 및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및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20. 06. 19.	
대덕구 재난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20. 06. 19.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	◦ 산업재해 및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현장 및 공공기관 등에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의 착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21. 12. 17.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23. 02. 17.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풍수해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23. 06. 23.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 및 생명 보호	2023. 12. 08.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해당없음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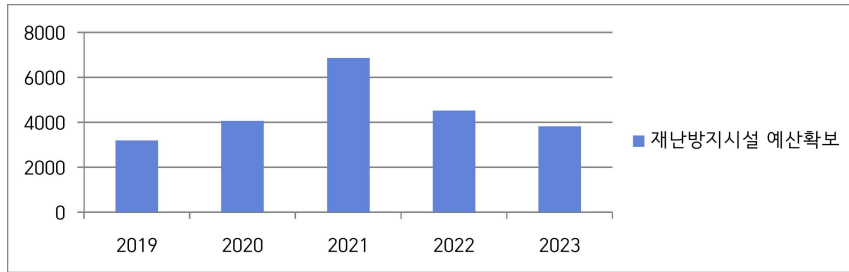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중리근린공원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리동 388-17번지 일원	하수관로(D45 0mm) 정비 L=290m	2023. 5. ~ 2023. 10.	260	재해예방
중리로26번길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리동 164-5번지 일원	하수관로(D45 0mm) 정비 L=106m	2023. 5. ~ 2023. 7.	100	재해예방
노촌어린이공원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오정동 311-6번지 일원	하수관로(D45 0mm) 정비 L=219m	2023. 7. ~ 2023. 10.	140	재해예방
계족로586번길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리동 476번지 일원	하수관로(D45 0mm) 정비 L=101m	2023. 6. ~ 2023. 8.	100	재해예방
신탄진북로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신탄진동 735번지 일원	하수관로(D1, 100mm) 정비 L=141m	2023. 4. ~ 10.	400	재해예방
대화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대화동 290-6번지 일원	하수관로(D50 0mm) 정비 L=200m	2023. 10. ~ 2023. 12.	250	재해예방
법동중학교 일원 배수시설 정비공사	법동 213번지 일원	배수시설 및 보도정비 (L=1.7km)	2023. 12. ~ 2024. 4.	350	재해예방
비래동 472-16번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비래동 472-1 6번지 일원	우수박스(2.0m x1.5m) 및 우수관로(D1,2 00mm) L=42 m	2023. 4. ~	250	재해예방

2023년 하수시설물 준설공사 (연간단가)	대덕구 관내 일원	하수시설물 준설 814ton	2023.1. ~ 2023.11.	243	재해예방
2023년 하수시설물 긴급보수 공사 (연간단가) 1,2구역	대덕구 관내 일원	긴급보수 1식	2023.1. ~ 2023.11.	635	재해예방
2023년 하수시설물 준설공사 (연간단가) 추가분	대덕구 관내 일원	하수시설물 준설 714ton	2023.11. ~ 2024.3.	228	재해예방
2023년 하수시설물 긴급보수 공사 (연간단가) 추가분	대덕구 관내 일원	긴급보수 1식	2023.11. ~ 2024.3.	192	재해예방
2023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대덕구 관내 지방하천 일원	관내 지방하천 3 개소(용호천, 법동천, 오정천) 유지관리 1식	2023. 1. ~ 2023. 12.	40	재해예방
2023년 소하천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대덕구 관내 소하천 일원	소하천 유지관리 1식	2023. 1. ~ 2023. 12.	50	재해예방
소하천(신대천) 정비사업	신대동 404-3 번지 일원	제방정비 L=147m	2023. 6. ~ 2023. 12.	166	재해예방
소하천 (배오개천) 정비사업(5차)	이현동 168 번지 일원	제방정비 L=150m	2023. 7. ~ 2024. 12.	200	재해예방
장동 831-4 3번지 일원 하천 정비공사	장동 831-4 3번지 일원	구거정비 L=44 m	2023. 12. ~ 2024. 2.	30	재해예방
2023년 사방사업	장동 산108-1 일원	계류보전 1Km	2023. 5 ~ 2023. 9.	168	재해예방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3,185	4,050	6,853	4,504	3,802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측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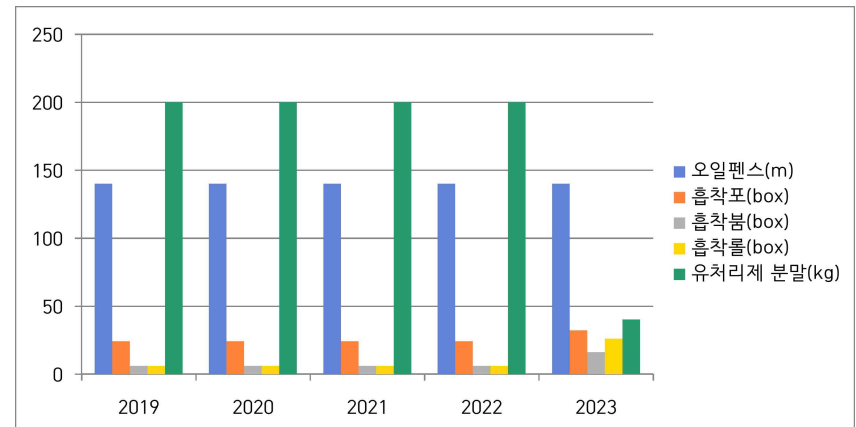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측

[방재물자]

구분	계	오일펜스 m	흡착제 (box)			유처리제 (분말) kg	비고
			흡착포	흡착봉	흡착롤		
총계	254	140	32	16	26	40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376	376	376	376	254
오일펜스(m)	140	140	140	140	140
흡착포(box)	24	24	24	24	32
흡착봉(box)	6	6	6	6	16
흡착롤(box)	6	6	6	6	26
유처리제 분말(kg)	200	200	200	200	40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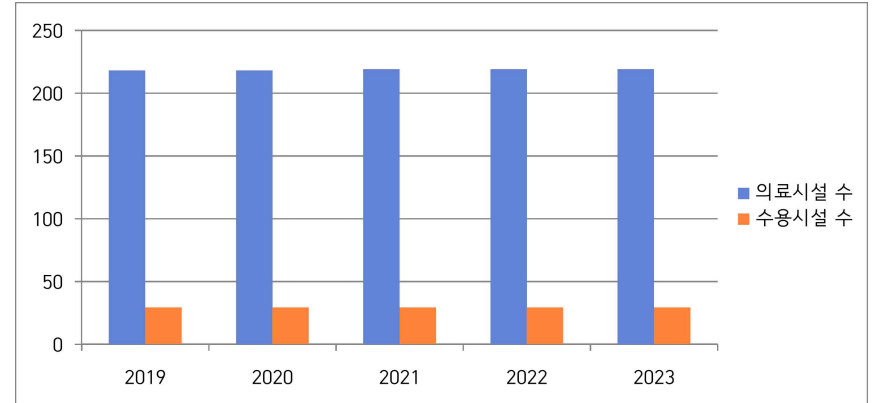
구 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 계	219	404	754	12	2,214	2
병·의원	218	402	731	10	2,214	2
보건소	1	2	23	2	0	0

[수용시설]

구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29	7,644	14	4,522	1	200	5	208	7	2,623	2	91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의료시설수	218	218	219	219	219
수용시설	개소	29	29	29	29
	수용인원	9,872	7,644	7,644	7,644



나. 장비 지정

[구조장비]

구분	계	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헬기	매물자탐지기	구조용프로	구명보트	구명환	구명등의	산소흡기	잠수세트	유압잭	에어백	기타
총계	157	1	1	1	0	2	36	5	0	85	3	10	6	1	6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집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그레이더	견인차	청소차	분뇨수거차	기타
총계	77	0	0	1	2	0	3	1	6	64

[산불진화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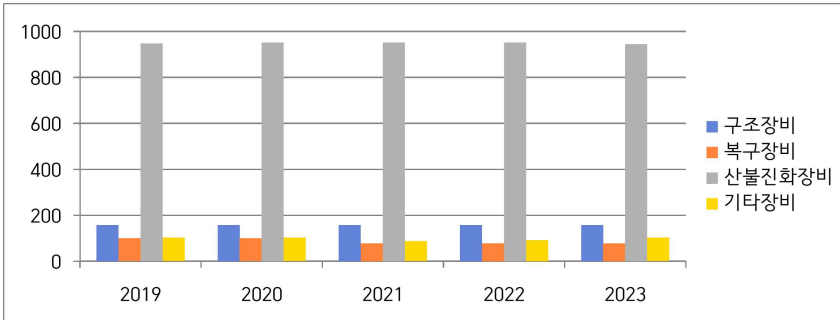
구분	계	헬기보유	헬기임차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진화도구	기타
총계	944	-	-	6	4	622	312

[기타장비]

구분	계	용접기	공무레사	양수기	발전기	천공기	착암기	절단기	화학차	전기복구차	가스복구차	통신복구차	제독차	기타
총계	102	5	1	48	5	0	0	25	0	3	1	1	0	13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구조장비	157	157	157	157	157
복구장비	99	99	77	77	77
산불진화장비	946	951	951	951	944
기타장비	102	102	86	91	102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방사능	삭제도	유기장	기타
인원	90	16	19	4	18	7	12	4	3	0	0	7

[기능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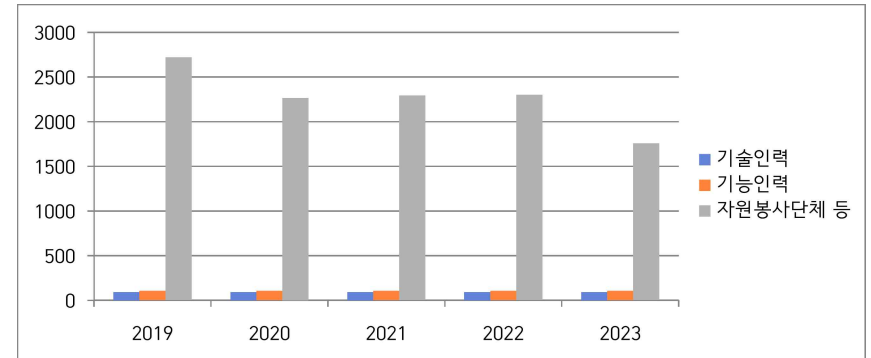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철근공	중기운전	중기정비	배관공	승강기관리원	기타
인원	102	8	6	13	0	0	16	0	33	5	6	0	15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소방대	산악구조대	수중구조대	아마추어무선봉사대	기타	적십자봉사대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인원	1,719	212	-	-	-	-	201	251	53	277	725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술인력	90	90	90	90	90
기능인력	102	102	102	102	102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2,717	2,263	2,289	2,298	1,719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가.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505백만원	505백만원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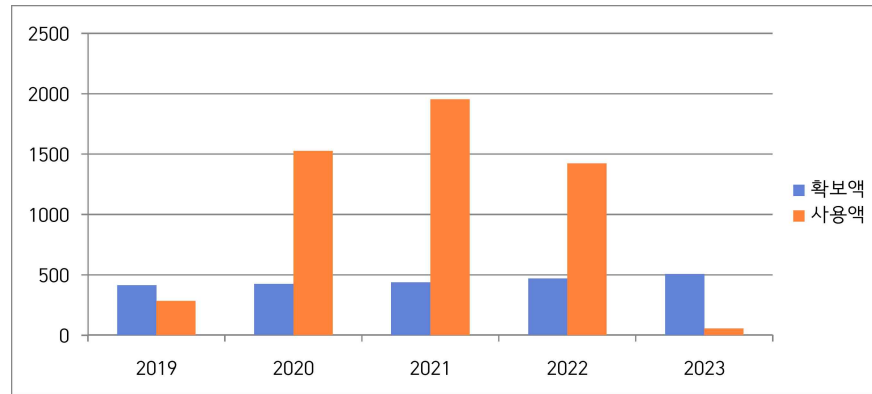
나. 누적 기준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누적 확보 기준액(①)	누적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4,780백만원	4,780백만원	10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확보액 (당해연도)		413	422	437	467	505
사 용 액	합 계	283	1,524	1,953	1,422	55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40	1,334	1,776	1,334	25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243	190	177	88	30
	민 간	0	0	0	0	0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0	0	0	0	0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영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등 총괄 현황]

연번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1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에너지산업과	2007. 11.	가축 전염병 발병에 따른 상황대처 및 수습
2	댐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09. 10.	댐붕괴 사고 발생 상황대처 및 수습조치
3	지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09. 6.	지진 재난 발생시 현장 대응조치 및 수습
4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09. 7.	풍수해 재난 발생시 현장조치 및 수습

연번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5	태풍·호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09. 7.	태풍·호우·대설 시 상황대처 및 수습
6	육상화학물운송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교통과	2013. 4.	육상화학물운송 마비사태에 대한 상황대처 및 수습
7	보건의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건행정과	2013. 4.	보건의료분야 사고 수습대응 조치
8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건소	2013. 4	감염병 발생 시 수습 대응 조치
9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과	2014. 2.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상황대처 및 수습
10	대규모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과	2014. 2.	대규모 수질오염발생에 따른 상황대처 및 수습
11	대형 화산폭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4. 4.	대형 화산폭발에 따른 상황대처 및 수습 등 조치
12	가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에너지산업과	2014. 5.	가스의 공급차질에 대한 상황대처 및 수습
13	전력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에너지산업과	2014. 5.	전력 공급중단 등에 따른 상황대처 및 수습
14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건축과	2014. 5.	다중이용시설 사고 발생시 상황대처 및 수습조치
15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공원녹지과	2015. 11.	산불발생시 상황대처 및 수습 조치
16	문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문화관광체육과	2015. 11.	상황보고, 긴급출동, 응급조치, 수습
17	항공기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교통과	2015. 12.	항공기 사고발생 상황대처
18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5. 12.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발생시 상황대처 및 수습
19	가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5. 12.	가뭄재난 발생시 현장대응 및 수습
20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경제과	2015. 6.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수습 조치
21	저수지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에너지산업과	2016. 11.	저수지 붕괴사고에 대한 상황대처 및 수습
22	고속철도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교통과	2016. 12.	고속철도 대상사고 수습 조치

연번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2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통합본	안전총괄과	2017. 5.	행동매뉴얼 통합
24	도로터널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건설과	2017. 06.	도로터널 사고에 대한 위기상황 대처
25	한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9. 3.	한파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조치 및 수습
26	폭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9. 11.	폭염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조치 및 수습
27	초미세먼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과	2019. 11.	초미세먼지 재난 대비
28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공원녹지과	2019. 11.	산사태 재난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황대처 및 수습
29	낙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22. 6.	낙뢰 발생 시 상황대처 및 수습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연번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개정 내용	비고
1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11.	매뉴얼 개선사업에 따른 정비	
2	댐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2.	비상연락망 정비	
3	지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4.	인사이동	
4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7.	비상연락망 및 부록 정비	
5	태풍·호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7.	비상연락망 및 부록 정비	
6	육상화물운송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8.	기관 및 연락처 등 현행화	
7	보건의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8.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정비	
8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8.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정비	
9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8.	조직개편 부서명 및 담당자 변경	
10	대규모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8.	매뉴얼 정비	
11	대형 화산폭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4.	비상연락망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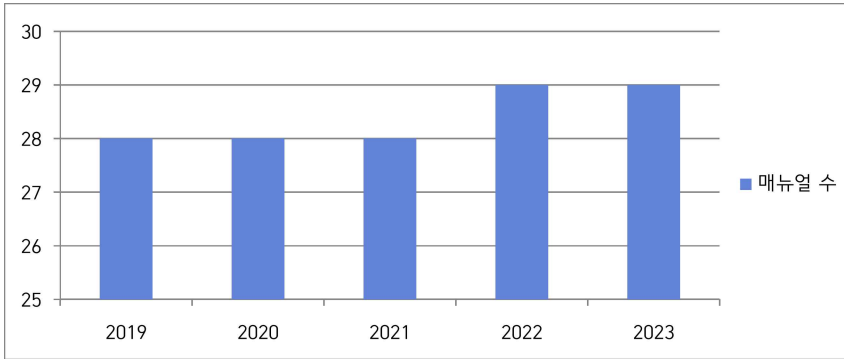
연번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개정 내용	비고
12	가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8.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정비	
13	전력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7.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정비	
14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8.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정비	
15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8.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 반영	
16	문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8.	비상연락망 정비	
17	항공기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6.	매뉴얼 정비	
18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6.	매뉴얼 정비	
19	가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6.	비상연락망 정비	
20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11.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정비	
21	저수지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9.	매뉴얼 정비	
22	고속철도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7.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른 행동매뉴얼 개정	
2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통합본	2023. 9.	매뉴얼 정비	
24	도로터널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8.	비상연락망 정비	
25	한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8.	비상연락망 정비	
26	폭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2.	비상연락망 정비	
27	초미세먼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7.	비상연락망 정비	
28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8.	비상연락망 정비	
29	낙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8.	비상연락망 정비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자체교육)	비고
2023. 9. 26.	-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반영 - 임무별 행동요령 숙지 - 현행화 및 개선사항 정비시 유의사항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매뉴얼 수	28	28	28	29	29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335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 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개정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관 물품을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무상대부 물품 현황에 대한 공개 및 대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나. 내용에 맞게 조문 제목을 정비함(안 제20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04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총무과  
(전화 : 042-608-6541, FAX : 042-608-3821, E-mail : ssm4879@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과 담당자(전화 : 042-608-65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무상대부 물품)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구에서 무상대부할 수 있는 물품의 현황은 제2조의 본청 물품관리관이 매년 초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의3(무상대부 절차) ① 제9조의2에 따른 물품을 무상대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물품 무상대부 신청서를 제2조의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은 신청자 적합 및 무상대부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물품 무상대부 허가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의 제목“(물품재고조사 등)”을“(사무인계보고서)”로 한다.

서식 목차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식 목차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2. 12. 7.>
별지 제4호서식	불용결정 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2. 12. 7.>
별지 제7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
별지 제8호서식	도서대출대장
별지 제8호의2서식	물품 무상대부 신청서
별지 제8호의3서식	물품 무상대부 허가서
별지 제9호서식	우표출납부
별지 제10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별지 제11호서식	물품 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2. 12. 7.>
별지 제13호서식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4호서식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2. 12. 7.>
별지 제16호서식	물품관리카드등록부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1995. 1. 16.>
별지 제18호서식	도서대장
별지 제19호서식	물품검사(수)조서
별지 제20호서식	물품검사서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12. 12. 7.>
별지 제22호서식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별지 제8호의2서식]

## 물품 무상대부 신청서

- 물품(재산)의 표시
  - 물 품 명 :
  - 규 격 :
  - 수 량 :
- 대부(사용)기간 :
- 대부(사용)목적 :
- 대부(사용)료 : 무상대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제14조의2에 따름
- 대부(사용)조건 :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인)

물품관리(운용)관 귀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제14조의2(물품의 무상대부)에 따라 구 소관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물품관리 담당자에게 보여주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별지 제8호의3서식]

## 물품 무상대부 허가서

○ 물품의 표시

품명	규격	수량	관리부서	비고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상기 표시 물품의 무상대부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건을 부여하고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붙 임 허가조건 1부. 끝.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연 락 처 :

년 월 일

## 물품 관리(운용)관 (인)

###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하며, 년 월 일 시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물품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물품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물품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물품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언제든지 허가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물품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2. 구의 승인 없이 제5조의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에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물품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물품을 반환할 때에는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물품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 행위라 하더라도 물품의 훼손 등 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p>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생략)</p>	<p>전까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물품 무상대부 신청서를 제2조의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은 신청자 적합 및 무상대부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물품 무상대부 허가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p> <p>제20조(사무인계보고서) (현행과 같음)</p>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2(무상대부 물품)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구에서 무상대부할 수 있는 물품의 현황은 제2조의 본청 물품관리관이 매년 초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제9조의3(무상대부 절차) ① 제9조의2에 따른 물품을 무상대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3일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367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기업지원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직무상 비위 사실이 있는 자 등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우수기업인에 대한 선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우수 기업인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 나.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
-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3).

라. 우수기업인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정함(안 제11조).  
 마. 그 밖에 담당조직 명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제7조 및 제13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경제과  
 (전화 : 042-608-6481, FAX : 042-608-3831, E-mail : minimax@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과 담당자 홍성진 (전화 : 042-608-64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2조 제1호”를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제4항 본문 중 “하되,”를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제팀장”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을 “우수기업인”으로, “있다”를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수여받은 상장, 인증 및 지정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로 같음한다”로 한다.

①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정부 또는 기업 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2. 그 밖에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구에서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도시형소공인”이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도시형소공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제2조제1호----- -----.
제7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제팀장이 된다. <신 설>	제7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하 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 -----. ⑤ ----- 기 업지원팀장--.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 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

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우수기업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줄 수 있다.

제13조(예우 및 지원 중단) ① (생략)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우수기업 등) ①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정부 또는 기업 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2. 그 밖에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구에서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② ----- 우수기업인-----  
-----  
-----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수여받은 상장, 인증 및 지정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로 같음한다.

제13조(예우 및 지원 중단) (현행 제1항과 같음)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370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운용 관련 조례 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 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
- 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상위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함.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전화 : 042-608-6054, FAX : 042-608-3811, E-mail : heeyk7379@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김희영 (전화 : 042-608-60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재난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이나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2.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3. 신고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

안전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 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 다. 시민단체 대표 또는 사회단체 대표
  - 라. 그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 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법령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이의신청 등)** ① 포상금 결정 통지서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16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로 한다.

제6조 중 “보조금 조례 제17조 각 호의 사항”을 “법 제8조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8조 중 “보조금 조례 제28조”를 “법 제11조, 제12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9조 중 “보조금 조례”를 “법 제17조”로 한다.

제10조 중 “보조금 조례”를 “법 및 보조금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㉚ 대전광역시 대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㉛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 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㉝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㉞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㉟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㉚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㉛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㉝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㉞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㉟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1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㉞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㉟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㊱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㊲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③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 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대상사건	사건명		
	피심인 (피조사인)		
	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	결정일자	년 월 일	
	결정내용	주문	대상자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을 지급함 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함)
		이유	

우리 구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직인

####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결정사항	결정일자	년 월 일
	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귀 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

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할 것.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371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체계 및 관리의무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다. 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 및 심의위원회 활동내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전화 : 042-608-6054, FAX : 042-608-3811, E-mail : heeyk7379@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김희영(전화 : 042-608-60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설치하여”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p>	<p>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 ----- --- 설치하되 <u>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u> ----.</p>
<p>제8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생략)</p>	<p>제8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② -----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lt;신 설&gt;</p>	<p>5. <u>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u></p>
<p>5. (생략)</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lt;신 설&gt;</p>	<p>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p> <p>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p> <p>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p> <p>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사항 등</p>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 장비 클린지킴이(CCTV) 이전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클린지킴이(CCTV) 이전 설치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9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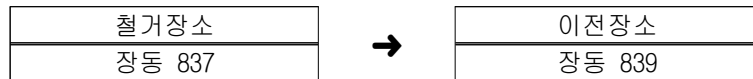
#### 1. 행정예고 내용

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클린지킴이(CCTV) 이전 설치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 2. 관련 근거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3. 설치장소



#### 4. 촬영범위 및 시간

가. 클린지킴이(CCTV) 설치구역 반경 5~20m, 24시간 센서 감응식 촬영

#### 5. 행정예고기간: 2024. 3. 29.(금) ~ 4. 19.(금) / 20일간

#### 6. 공고방법: 대덕구 공보 및 홈페이지(www.daedeok.go.kr)

#### 7.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서식 참조

- 1)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 2)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기간: 2024. 4. 19.(금)까지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라. 제출 및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자원순환과

(전화 042-608-6834, FAX 042-608-3850, E-mail: guswjd8569@korea.kr)

마.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 견 제 출 서				
행정예고명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 클린지킴이(CCTV) 이전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민(법인) 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의견제출 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CCTV 이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끝.